

주
자

공 고 : 그린해모원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두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5-19

충탄장소 : 서울시 중랑구 중화2동 301-28호 성민빌딩 5층

그린해모원 중앙보사센터 강북보사팀 관영수

(우)131-880

☎ 02) 978-2671

피 고 : 이영준

주 소 : 서울 노원구 상계동 407-7 종효파크타운 303호

(우)139-200

☎ 010-8925-3409

채무부존재확인 의 소

청 구 취 지

1. 소외 유영오와 피고 사이의 2010.05.21 21:20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중앙시장에서 56마3792호 차량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물론 그 조속재해보험을 손해보험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소외 유영오와 그 소유 56마3792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하겠습니다.)을 원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당제1호증)

III고는 원고 차량과 발생한 사고로 부수한 피해자 관계입니다.

2. 平素사교의 注意

[illegible][illegible]

공고는 자동차등록차로서 피고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공인인 공해배에 대하여 근접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공고는

치료병원	치료기간	임.동원	임수	비고
도봉병원	2010.05.20-2010.05.26	임원	4원	304,200
합의금				1,300,000

하기와 같이 처리하여 이 때에 발생하는 모든 자금을 모아서 이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4. 주해배우자의 제하

2010년 5월21일 21시20분 (석가탄신일, 불일) 서간발송하여 공전자인
주위 권동석이 22시08분에 서간 접수하였으므로 5월 25일 14시 05분까지

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피해를 당한 피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적정한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에 따라 피고에게 귀속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대하여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5. 결 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본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귀속될 수 있다.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에 최종 사고접수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원고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다.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귀속될 수 있다.

또한 7월2일에는 여제(7월1일) 원고차량 운전자 김중덕과 경찰서에서 대질신문이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소외 김중덕이 원고 회사에서 피고의 전화 번호를 알려주어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귀속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귀속될 수 있다. 원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공전자 소외 김중덕에게 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본래의 지분이 당사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당사자는 원금기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신인: 김민준 (김민준) (전송번호: 010-8925-3409) 주민등록번호: 671216-1884110

20/04 15/05 10/06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체의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각서합니다.

본인은 위 사항이 착오기재로 인하여 그린다해보함(주)로부터 지분된 보합금에 대하여는 기 수렴

※ 학의서 작성자, 예문주, 육문의뢰인은 육문의뢰이어야 합니다.

이행면	조지현	이규준	이규준
제차번호	04900000001104	이규준	이규준

사기 또한 금릉 아래의 은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것을 요합니다.

음금의뢰서(문인적첩기재)



보리밭 하룻

(七) 是百世師也

ཡི་དྲུག་ རྒྱལ་ཁབ་ལྷན་ཁྲིམས་ལྟར་

10 11 12

피음자위 10자음 10자음

(是) 子 曰 可 也

20

20/6/74

⑩ 1/2음높음 2/2음

: 五箇年を以て ⑩

: 2014년 10월 10일 (10)

691216-1897210

[illegible]

수원군청 100.000 원 (100.000 원) 100.000 원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인화교의 이념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았다.

[illegible]

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후원의 증거로서 이 학의서에 서명한다 한다.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추가

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가해자(을)가 부담하여야 할 제3자에 부담으로 화실의 수익하고 상호 원만히

[illegible]

2010년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 30분

: 五福臨門

• 〇 〇

: 互換品性

： 〇 〇
： ㊦ ㊧

릉 : 가 : 영 : 자 : 주 : 토 :

•

 $\cdot \frac{1}{2} \frac{1}{2} \frac{1}{2} \frac{1}{2} \frac{1}{2} \frac{1}{2}$

10	10	10
----	----	----

0101

◎녹음 3(그린손해보험박양수과장)

이성준 : 여보세요.

박양수 : 네.

이성준 : 네. 안녕하세요. 도봉병원에서 그저께 합의 본 이성준인데요.

박양수 : 예.

이성준 : 예. 제가 몸이 더 안 좋아서 어저께 또 물리치료 병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다른데서 지금 MRI도 찍어 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박양수 : 어디가요?

이성준 : 허리요. 허리하고 어깨하고요. 어저께 일하러 나가려는데 도저히 안 되가지고 병원에 다시 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때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나한테 협박해가지고 내가 그날 보자마자 바로 합의 봐준 거였거든요. 우리 애들 뭐 어떻게 할까봐. 아시잖아요. 협박하신 거. 그죠?

박양수 : 그 협박 내용은 모르죠.

이성준 : 그 협박 내용은 모르는데 협박한 거 전화한 건 아니잖아요.

박양수 : 그날 통화 했던 애기도 알고요. 협박 ...

이성준 : 예. 그래가지고 그린손해보험에서 추가로 지불대리 안 해주면 제가 이 사람을 협박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걸 기초로 내가 합의를 무효로 하겠다고 내 친구가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박양수 :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이성준 : 그렇죠. 나 이 사람한테 폭행까지 당했어요. 폭행당하고 병원에 있을 때 협박 전화 와가지고 협박도 당하고 그거 다 자료도 있거든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합의서 그거를 무효 판정을 받든지 해야 되겠는데요. 아휴, 밤 되가지고 저께도 다시 병원 갖고 오늘도 지금 또 병원 갈 거예요.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일이고 뭐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돈 몇 푼 더 받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는 안 해준다 이거죠?

박양수 : 예예.

이성준 : 예. 알겠습니다.